

**1) 학생인권조례의 철학과 열쇳말 (강연)**

\* 진행 - 경내

**2) 학생인권조례 중 주요 쟁점 사항에 관한 토론**

: 서명작업에서 주로 제기되는 질문들 또는 학교생활규정 개정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들

\* 진행 - 공현

- 수업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 괜찮을까?
- 교복, 학생들도 입기를 원하는데...
- 두발, 염색까지 허용하는 건 좀...
- 집회는 너무 오버 아닌가?
- 간접체벌은 체벌이 아닌가?

**3) 학생인권의 부작용?**

: 최근 언론의 기획 보도 실태(교사에 대한 폭행, 교실 붕괴 담론 등)

\* 진행 : 전누리

: 학생인권의 부작용으로 언급되는 장면들을 어떻게 돌파해야 할 것인가?

**[예상 논의 과제]**

- 학생과 교사, 모두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 폭력적인 문제해결 방식에 의존해온 문화, 교사와 학생 서로간의 불신, 낮은 인권 의식, 교사들의 냉소적 태도 등
- 학생인권 '대책'이 잘못 운영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예) 학생에 대한 엄벌주의 부활 등
- 학생인권조례 후속 대책으로 정말 준비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구조를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  
예) 학교 민주주의 실현 방안, 학급당 학생 수 감소 등
- 교사의 자율성을 어떻게 봐야 하나? '조례'는 교사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인가?
- 수업규칙, 핸드폰 이용 규칙 등 더 많은 규칙을 만들어내는 일이 교육을 인권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4) 학생인권조례 이후, 무엇을 대안으로 제시할 것인가?**

: 상벌점제

: 가혹한 법치 - 출석정지제도 등

: 학생자치법정

: 성찰교실

: 인권교육

\* 진행 : 경내

# 학생인권조례의 이해

배 경 내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 1. 학생인권과 교육권

### 가. 학생인권은 교육권의 필수요소

유엔은 국가의 인권 보장 의무를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한 바 있다. 국가가 직접적인 가해자가 되어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할 '존중(respect)의 의무', 제3자에 의한 인권 침해를 예방해야 할 '보호(protect)의 의무', 그리고 인권 수준을 높이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인 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통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실현(fulfill)의 의무'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 교육기본법 12조와 초중등교육법 18조의 4가 학습자의 인권 보호 조항을 통해 국가의 학생 인권 보장 책임을 재확인하고 있으나, 선언적 조항에 머무르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으로서의 실효성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 2003년 학생생활지도의 방향을 '학생의 인권·자율·책임 중시'로 설정하고 2006년 「학생인권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일부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져 왔으나, 학교 현장에서 의미있는 변화를 불러일으키지는 못했다. 이는 정부의 정책 수립과 권장만으로는 학생인권 침해를 예방하기에 역부족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의 개정·보완과 아울러 지방 조례 등을 통해 학생의 인권이 교육과정에서 존중, 보호,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

우리 교육의 선진화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 가운데 하나가 학생인권의 보장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sup>1)</sup> 우리 헌법 규정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4P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4P란 보호(Protection), 예방(Prevention), 제공(Provision), 그리고 참여(Participation)를 말한다. 18세 미만 모든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차별없이 보장하고 침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며 인권 실현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한편, 이 모든 과정이 어린이·청소년 자신의 의사를 존중하고 참여를 보장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교육 현실에서는 학생의 의사를 존중하고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와 문화를 찾아보기 힘들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제출한 1.2차 이행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한국 정부에 몇 가지 주요 권고를 내놓은 바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 교육에 대해 크게 우려를 표한 대상은 △체벌이 공식적으로 허용된다 △학교에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자의적인 기본권 제한이 많다 △학생회에 대한 행정적 통제와 학교 밖 정치활동 참여를 금지하는 교칙을 통해 학생의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 △교사 등 아동관련 전문가에 대한 인권교육이 부족하다 △교육의 경쟁적인 풍토가 아동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고 자유로운 사회에서 책임있는 생활을 영위할 준비를 하는

1) 학생인권과 교육권에 관한 국제인권준칙에 관한 자세한 이해를 위해서는 필자와 인권연구소 '창', 성공회대인권평화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의뢰받아 개발한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서」(국가인권위원회, 2007) 1부를 일독할 것을 권한다.

과정을 가로막을 위협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수용, 이행하는 것은 우리 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요청되는 것이나, 학칙 등 학교규정을 통해 학생의 인권이 자의적으로 제한되는 현실은 여전히 극복되지 않고 있다.<sup>2)</sup>

국제사회가 제시하고 있는 교육권의 실현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도 학생 인권의 보장은 필수적이다. 유엔사회권위원회와 ‘유엔 교육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교육권 실현을 위해 국가가 이행해야 할 4대 의무(4A)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교육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용성’(Availability)을 보장할 것, 교육기회에 대한 물리적·경제적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차별없는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접근성’(Accessibility)을 보장할 것, 교육의 형태와 내용이 학습자와 보호자가 육체적·정신적·문화적으로 수용할 만한 것이 되도록 ‘수용성’(Acceptability)을 보장할 것, 그리고 교육의 내용이 학습자의 다양한 환경과 요구, 최선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적용성’(Adaptability)을 보장할 것이 바로 ‘4A’이다.<sup>3)</sup> 이 가운데, 우리 교육에서 학생 인권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이 바로 접근성과 수용성 측면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유엔아동권리협약 28조 2항<sup>4)</sup>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학교의 규율이 과연 학생의 존엄성을 보장하기에 충분한지, 학습의 양과 학교규율의 정도가 학생의 학교생활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부나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인권이나 학교규정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일은 학교의 자율성을 우리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낯선 일이 아니다. 일례로 「뉴욕시 징계 및 중재 기준(규율규정과 학생의 권리·책임 규정)」을 살펴보면, 교육청 지침을 통해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sup>5)</sup>

우리의 경우, 교육청 차원의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수준이 아니라 조례 제정이 별도로 요구되는 이유는 조례라는 형식을 통해 법적·정책적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학교 자율화’라는 명분으로 학생인권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기

2)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한국정부의 1차 보고서에 대한 논평 및 권고(1996년 2월)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한국정부의 2차 보고서에 대한 논평 및 권고(2003년 1월). 그 가운데 특히 주목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론적으로 위원회는 매우 경쟁적인 교육 시스템이 아동 잠재성의 최대한의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위원회의 우려를 반복한다.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다. ...경쟁성을 감소시키고, 협약 29조 1항과 교육의 목적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1에서 언급된 교육의 목적을 반영할 목적으로 정부의 교육 정책을 재고하라.”(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한국정부에 대한 2차 권고 52-53항). “위원회는 학생회에 대한 엄격한 행정적 통제와 초·중등학교에서 교외정치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학교 교칙으로 인해 학생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음에 우려한다. ... 협약 12-17조의 견지에서, 위원회는 의사결정과정과 학교 내외에서의 정치활동에서의 아동의 능동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률, 교육부가 만든 지침 및 학교교칙을 개정하고 모든 아동이 결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한국정부에 대한 2차 권고 36-37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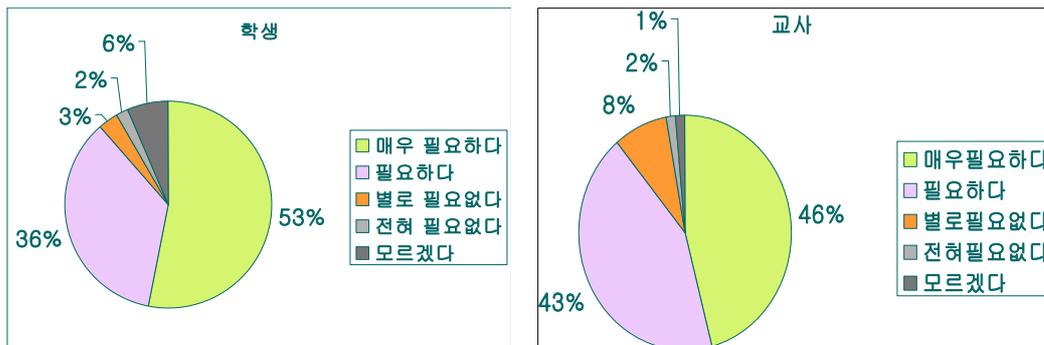
3) 좀더 자세한 내용은 유엔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13, 6-7항, 그리고 유엔 교육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 E/CN.4/2005/50을 참고하면 된다.

4) “학교규율이 어린이·청소년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뉴욕시 교육청이 제시한 학생의 권리로는 △무료 공립학교 교육을 받을 권리(차별, 괴롭힘, 편견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구제를 받을 권리, 개인 기록에 대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등) △표현 및 개인의 자유(학생회 또는 각종 모임을 구성, 참여할 권리, 학교생활에 의견을 표명할 권리,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위원회를 대표할 권리(필요시 투표권도 행사), 정치적인 것을 포함하여 전 단지를 배포하거나 배지, 완장 등을 착용할 권리, 자신의 복장을 결정할 권리(위험하거나 학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를 제외), 체벌을 받지 않을 권리, 몸 수색 등 부당한 검색을 받지 않을 권리, 맹세를 위한 기립을 거부할 권리 등) △적법절차에 대한 권리(징계조치에 대해 통보받을 권리, 이의를 제기할 권리, 성인 또는 대리인과 동반 출석할 권리 등)가 포함된다.

때문이다. 2008년 정부에 의해 취해진 ‘4.15 학교자율화 조치’는 학생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정부 지침들<sup>6)</sup>이 교육청이나 학교 단위로 위임되는 한편, 학교규칙에 대한 교육감의 인가권까지 삭제하는 방향으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1월 12일,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삭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정부에 의해 제출되어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음. 이러한 조치는 단위 학교의 민주적 참여 통로와 의결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장의 권한만 비대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인권이라는 중대 사항을 개별 학교 단위에만 맡겨두는 것은 국가의 인권 보장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4.15 학교자율화 조치 이후 야간 12시까지 또는 토·일요일에도 강제자율학습을 실시하는 학교, 0교시 수업을 운영하는 학교, 쉬는 시간을 5분으로 단축한 학교 등이 증가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정부 차원의 각종 지침들이 폐지되고 있는 환경에서 교육자치입법을 통해 학생인권의 구체적 보호 지침을 수립하는 일은 더더욱 중요성을 지닌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학생인권의 신장을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하여 별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교육주체들 사이에 보편적 인식이 되어가고 있다. 2010년 10월 18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가 참교육연구소에 의뢰해 교사 1578명, 학생 1885명, 학부모 9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에 관한 학생, 교사, 학부모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한 학생이 53.6%, 교사는 45.8%였고, ‘필요하다’고 답한 학생이 35.6%, 교사가 42.9%로 매우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학부모도 ‘매우 필요하다’가 26.6%, ‘필요하다’가 61.0%로 집계됐다.



교육 관련 주체들이 별도의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학생의 자치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학교안 민주적 소통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자율’이란 법치(法治)나 협치(governance)가 아니라, 인치(人治)나 지배(domination)를 초래하게 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학교의 자율성이 민주적 가버넌스에 기반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일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 나.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28조(교육의 목표) 조항을 통해 교육이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

6) △수준별 이동수업, 0교시·심야보충과 관련한 학사지도지침 △방과후 학교 운영 지침 △사설모의교사 참여 금지 지침 △촌지 지침 △종교교육 교육과정 지도 철거 지침 △전문계고(실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유엔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이라는 목표에 부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권을 위한 교육,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은 도달해야 할 하나의 이상이 아니라, 교육권의 핵심적 요소의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교육 역시 공식적으로는 민주시민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요소는 인권, 민주주의, 그리고 법의 지배(The rule of law)라고 봐야 할 것이다. 곧 자유로운 학교 분위기 안에서 인권을 보장받고 행사하는 기회와 과정을 통해서 시민으로서 책임감도 동시에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곧 민주시민교육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봐야 한다.<sup>7)</sup> 또한 ‘법의 지배’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필수적이다. ‘법의 지배’(the rule of law)는 ‘법에 의한 지배’(the rule by law)와는 구분되는 것으로서, 후자가 실정법에 대한 기계적 준수를 요구함으로써 국가가 아닌 국민을 지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면 전자는 법의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을 살피고 실정법에 대한 형식적 적용보다는 법의 이면에 놓여있는 ‘법의 일반원리’에 충실한 법적 판단을 요구함으로써 국가를 민주적으로 통제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은 법의 일반원리 가운데 최고의 원리에 해당한다.

학교교육을 통하여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부터 인권을 보장받고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와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칙 등 학교규정의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이 갖추어져 있는가를 살피고 참여할 기회 역시 학생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학교에만 내맡겨둘 것이 아니라 법을 통하여 학교생활에서 준수되어야 할 인권의 기준과 관련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다. 학교공동체의 신뢰 회복

학생인권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교사-학부모 상호간에 불신과 다툼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의식은 높아가는 반면, 학교는 이러한 변화에 융통성 있게 부응하지 못함으로써 안정적인 학습 분위기도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교사들이 생활지도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학교가 제시한 규정의 정당성을 둘러싼 다툼이 깔려 있다.

학생인권과 관련한 소송이나 진정, 민원 등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로 접수된 진정 사례들을 살펴보다도, 학교를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는 더 이상 시민들이 학교의 규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규정의 정당성을 따져 묻는 인권의식이 성장한 결과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소송과 진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고 당사자들의 정신적 부담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학생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 [국가인권위 주요 결정례]

7) “배움에 동기를 부여하고 양질의 교육에 버팀목이 되는 가치(예를 들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 능력, 능동적 시민되기)의 관점에서 볼 때, 학습 과정의 행위자인 학생과 교사의 요구가 확인돼야 하며, 이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학교 시스템을 고치기 위한 조정이 있어야 한다. 민주적 시민권의 행사는 교육당국의 명령 또는 지시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교실과 학교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한다. 교실과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것을 격려하고 허용해야 하며, 스스로 생각할 자유와 타인의 견해를 존중할 자유를 이해하는 장이다. 교육에 대한 권리는 이러한 자유의 행사를 포함한다.”(유엔 교육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 E/CN.4/2005/50, 115-117항)

-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보완하라는 결정(2003년)
- 초등학생 일기검사 관행이 학생의 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다른 교육적 수단을 마련하라는 결정(2005년)
- 학생에게 두발의 자유는 기본권이라는 결정(2005년)
- 여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위해 생리공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결정(2005년)
- 학생의 휴대폰 소지를 전면 금지하고 근거도 없이 휴대폰을 수거, 열람하는 것은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 침해라는 결정(2007년)
- 학생선수에 대한 신체적·성적 폭력 근절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발표(2007년)
- 학생에 대한 조기 등교 강요는 학생의 건강권과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결정(2008년)
- 학생에게도 평화로운 학내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결정(2008년)
- 성적을 기준으로 성적 우수자에게만 자율학습 전용실(정독실)을 제공하는 일, 성적 우수자반을 별도 편성하는 일, 지방자치단체가 기숙형 공립학원(인재숙)을 운영하면서 성적 우수자만 선발·지원하는 것 등은 교육기회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결정(2008년)
- 수업 도중 학생을 불러내어 경찰 조사를 받도록 한 것은 학습권 침해라는 결정(2008년)
- 학생 명찰을 고정 부착시켜 학교 밖에서도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토록 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결정(2009년)
- 학생 비혼모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결정(2010년)

## 2. 학생인권과 교사

### 가. 교사의 정당한 권리란 무엇인가

교사의 권위는 자발적으로 형성되어야 하는 것인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다. 반면, 권리는 권리의 주체, 내용, 그리고 그 권리의 보장을 요구할 의무 대상자라는 세 요소로 구성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권리 개념에 기초할 때 교사들이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로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 교사라는 신분(직책)을 보장받고 인간답게 일할 권리(노동권), 그리고 교수권(수업권)을 들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 세 가지 요소의 권리 모두가 교사에게는 잘 보장되지 않고 있다. 교사라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 정치적 자유가 박탈당한 채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고, 노동권도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교수권(수업권)에서 핵심적인 요소를 차지하는 ‘교육의 자유’와 ‘학생에 대한 평가권’ 역시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사의 직권(職權)인 교육의 자유가 강조되어야 할 이유는 교육 바깥의 부당한 간섭이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교육이 ‘주입’이 아니라 ‘서로 배움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의 교권 논의는 ‘학생 지도권’ 또는 ‘학생 통제권’에 주로 집중되어 있을 뿐이다. 최근 참교육연구소의 의식조사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교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교권 침해’의 내용도 변화하고 있다. 교권 침해의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교사의 상당수가 교과부, 교육청, 학교관리자를 지목했다는 사실, 교사 권리 보장을 위해 교육의 자율성과 비민주적 학교운영과 교육행정 개선을 꼽았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 누구로부터 교권침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는지 (교사)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	전혀 그렇지 않다
교육과학기술부	52.5%	34.6%	12.0%	0.9%
교육청	40.2%	43.3%	15.6%	0.9%
학교관리자	36.7%	40.5%	20.7%	2.1%
학부모	18.4%	43.8%	33.4%	2.2%
학생	10.2%	29.6%	44.1%	16.0%

○ 학교에서 교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교사)

학생에 대한 통제 강화	비민주적 학교 운영과 교육행정 개선	교사의 기본적 권리와 교육적 자율성 인정
3.0%	60.9%	69.4%
교육예산 확대 및 지원 강화	입시경쟁교육의 해소	학교가 책임지는 민원 창구 개설
5.3%	38.2%	4.4%

일명 ‘오장풍’ 교사 체벌 사건에 이어 9월 초등학생 운동선수 체벌 사망사건, 10월 수원에서 발생한 ‘떡때’ 체벌 사건에 이르기까지, 학생인권 관련 사건이 터질 때마다 학생인권이 학교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교사집단의 문제인 양 호도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교사로서 자긍심을 갖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교사들이 학생인권에 좀더 분명한 태도를 취하면서 교사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교사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더 나은 방안일 것이다.

#### 나. 학생지도권, 교사의 권리인가 의무인가?

교사의 학생 지도권은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할 책무가 있다. 만약 교사의 지도 내용과 방식이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면, 이는 정당한 교권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물론 교사가 정당한 지도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공격적(문제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은 교사라는 직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입을 수 있는 일종의 ‘산업재해’(노동재해)와 같은 것이다. 학생의 공격적 행동 이면에는 다양한 맥락과 역사가 숨어 있을 수 있다. 이때는 교사의 권위를 내세워 학생을 제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의 변화를 기다려주고 상처를 어루만져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접근법을 택해야 한다.

그동안 이러한 시스템 마련이 긴급한 교육 의제로 떠오르지 않았던 이유는 그것을 ‘교사의 학생 지도력 문제’로만 접근해 왔고, 그에 따라 교사들이 체벌이나 강압적 교육 수단을 통한 순간적 행동 통제에만 매달리도록 요구받아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생이 문제행동을 일으켰을 때 그 행동을 제압하지 못하는 교사는 ‘무능 교사’라는 낙인까지 부여받아야 했다. 문제의 뿌리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학생에게 보장되어야 할 인권 기준이 명확해야 하고, 교사의 신분도 안정돼 있어야 한다. 그래야 불이익에 대한 압박이나 심리적 부담 없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좀더 근본적으로는 교사의 ‘학생 지도권’이 과연 권리인지 아니면 교사에게 부여된 ‘의무’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부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학생들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사를 체벌한 사건이나 올 9월초 한 사립학교 교장이 학생들 복장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사를 체벌한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학생 지도권은 교사에게 부여된 의무인 측면이 더 강하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을 가하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2008년 강릉에서 학생회장 선배에게 맞아 후배가 사망한 사건은 학교의 비합리적 규정과 폭력적 선도가 교사의 업무 스트레스 증가는 물론 학교 현장에 어떤 비극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학생들조차 ‘폭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얼마나 길들여져 있는가를 보여준 충격적 사건이었다.<sup>8)</sup> 그러므로 학생인권은 학생지도권이라는 미명 하에 교사에게 부여된 과중한 ‘학생 통제 업무’를 줄이고 학생들 사이의 폭력 문화를 줄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폭력 행위의 증가 역시 학교 안 인권문화를 정착시키고 인권교육에 힘써야 할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교권 실추 사건’으로 공개된 사건들도 살펴보면, 피해 교사가 신규·여교사에 집중되어 있음<sup>9)</sup>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교권 침해의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기준에서 상대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공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학교 안 폭력 문화를 바로잡고 교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학교가 먼저 공식적 가치로 인권을 선언하고 예방 교육에 힘쓰는 것이 필요하다.

### 3. 학생인권조례의 기본 철학

학생인권조례는 아래와 같은 교육 철학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학생인권 보호 입법이다.

#### 인권이 꽃피는 학교를 만드는 열 가지 열쇳말

1. 학생을 권리의 존엄한 주체로 대하는 학교
2. 참여와 결정을 경험할 수 있는 학교
3. 차이를 존중하고 차별에 맞서는 학교

8) 조희 시간 불참자를 단속 중이던 강릉 K고 학생회장은 교실에 남아있는 2학년 후배와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후배를 숨지게 하였다. MBC PD수첩은 이 사건을 후속 취재하였는데, 당시 인터뷰에 응한 3학년 학생 상당수가 ‘죽은 건 안타깝지만 선배에게 대든 후배는 손을 봐주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평소의 인식이 비극적인 사건을 키웠다.

9) 지난 2010년 7월 19일 수원 D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담임인 A모 여교사가 평소 행실이 불량한 B군을 꾸중하던 중 B군이 반발하며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2009년 말에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기간제 여교사에게 ‘누나 사귀자’라면서 희롱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4. 감당할 만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
5.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책임 있는 삶의 자세를 배우는 학교
6. 학생의 삶에 대한 총체적 돌봄이 있는 학교
7. 인권의 상호불가분성을 존중하는 학교
8. 네트워크와 연대가 꽃피는 학교
9. 교사의 권한과 역량을 존중하는 학교
10. 권리를 회복할 권리가 보장되는 학교

첫 번째 원칙은 학생 역시 권리의 존엄한 주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학창시절은 인권이 유보된 대기실로 간주되어선 안 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8>을 통해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지위를 독립된 인격체이자 인권의 주체로 단언”하고 있음을 재확인한다. 첫째 원칙의 거르개에 학교를 집어넣어 볼까. 학생의 인격과 가능성을 무시하는 언어폭력들, 차가운 복도 바닥에 엎드려 반성문을 쓰게 하는 관행들, 모든 학생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일제 소지품검사 등이 걸러내야 할 찌꺼기가 될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은 학교가 참여와 결정을 배울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는 것. 학생은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수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하고 변화를 성취할 수 있어야 한다. 장식에 불과한 참여, 이름뿐인 참여, 결과를 이미 조작해둔 참여는 진정한 의미의 참여가 아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5>에서 “아동의 의견을 듣는 것처럼 가장”하지 말고 “적정한 비중을 부여”할 때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한다. 두 번째 원칙의 거르개로 학교를 걸러볼까. 왜 학생의 동의가 아니라 부모의 동의를 만나, 학교생활규정을 만들고 고치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은 왜 참여하지 못하나, 머릿수 채우기 위해 학생을 이런 저런 행사에 동원하는 게 교육인가 하는 의문이 자연스레 뒤따른다.

셋째, 학교는 학생의 다양성을 사랑하고 차별에 맞서야 한다. 유엔 교육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2004년 12월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E/CN.4/2005/50)를 통해 “다양성은 교육의 초석”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우리 학교 현실은 어떠한가. 학생을 성적순으로 갈라놓고 우등생만이 학교의 명예를 빛낼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나. 장애를 가진 학생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고 교육과정에서 배제되고 있지는 않은지, 성정체성을 탐색할 기회가 자유롭게 열려 있는지, 학교 환경과 교사들의 발언이 여성의 존엄성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는지를 세 번째 원칙은 되묻고 있다.

넷째 원칙은 교육은 학생이 감당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 학생에게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주는 교육은 정당한 교육의 궤도에서 이탈한 것이다. 학생은 공포와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교육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동료들 고발하고 적발하도록 만드는 선도부의 존재,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차별과 왕따, 건디기 힘든 학습부담, 운동기계로 내모는 학생선수 육성 관행 등과 단호히 결별해야 하지 않을까.

다섯째 원칙은 ‘책임 먼저, 자유는 나중’이라는 공식의 잘못을 꼬집는다. 책임 있는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힘은 질서에 대한 강박증이나 강압적 지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유를 행사하는 경험으로부터 길러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고 그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격려 받을 때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힘도 기를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 학교는 학생의 입을 틀어막고 과도한 규정으로 학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처



▲ 경기도 한 초등학교의 모습. 선도를 맡은 학생들이 일일이 친구와 후배들을 쫓아다니며 동태를 살펴 보고한다. [출처: 교육희망]

바이트를 하면서 온갖 모욕을 감내해야 하는 학생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학교에서 과연 돌봄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일곱 번째는 인권의 상호불가분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학생에게 ‘무엇을 얼마나 주었나’뿐 아니라 ‘어떻게’ 주었는지도 함께 질문되어야 한다. 유엔사회권위원회는 <일반논평 14>에서 ‘건강권 실현을 위해서는 적절한 보건서비스의 제공뿐 아니라 프라이버시에 대한 존중도 함께 가야 한다’고 말한다. 상호불가분성의 원칙은 학생의 건강이나 안전을 보살핀다는 명분으로 학생의 자유를 구석에 몰아넣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를 묻는다. 이를 떼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이유로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 나가 놀지도 못하게 하는 조치는 과연 정당한지 말이다.

여덟 번째 원칙은 네트워크와 연대가 꽃피는 학교이다. 학생 인권 보장을 교사 개개인의 책임으로만 미뤄두는 것은 가혹할 수 있다. 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로 질문을 옮겨야 한다. 학교 안 자원만으로 부족하다면 정부에 지원을 요구함과 동시에 적극적 네트워킹을 통해 학교 밖 자원을 끌어들이면 어떨까. 사회에 함께 살아가는 이주노동자를 교실수업으로 초대하는 학교, 지역사회의 현안에 학생의 참여를 독려하는 학교, 법률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도움을 받을 만한 기관을 적극 소개해주는 학교에서 학생은 연대의 가치를 자연스레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아홉 번째는 교사를 학생인권의 옹호자이자 변화의 촉매자로 초대하려면 그들이 충분한 권한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 2000년 세계교육포럼에서 채택된 <다카 행동계획>(Dakar Framework for Action)은 “어떤 교육 개혁도 교사의 능동적인 참여와 주인됨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한다. 교사의 능동적 참여를 이끌어내려면 책임을 강조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700명의 학생이 단 한 개의 화장실밖에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비리와 인권침해로 얼룩진 충암중고의 현실은 징계 위협에도

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기 생각을 거짓으로 고해야 하는 학교, 전단지나 서명용지 하나 돌리면서 쫓겨날 각오까지 해야 하는 학교는 과연 정의로운가.

여섯째 학교는 학생의 삶을 총체적으로 돌볼 수 있어야 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중요한 인격적, 사회적 환경인 만큼, 학교에 오기 전과 학교를 떠난 후에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어젯밤 술 취한 아버지에게 두들겨 맞고 휘청거리는 마음으로 겨우 학교를 나온 학생을 수업 태도 불량으로 벌주는 학교, 도와달라고 보내는 학생의 간절한 눈빛을 읽지 못하는 학교, 최저임금도 안 되는 월급 아르



▲ ‘똥 쌀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학교 앞 시위에 나선 충암고 교사들. 학생인권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교사들의 권한을 확보해주어야 한다. [출처: 교육희망]

거리로 나선 교사들의 용기 덕분에 알려질 수 있었지만, 그런 용기를 모든 교사에게 요구할 순 없다. 그런 의미에서 교사들의 입을 막고 길들이는 교원정책은 교사의 인권은 물론 학생의 인권까지 후퇴시키게 된다. 인권을 옹호하는 교사들의 주장에 힘을 실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학생인권에 관한 분명한 법적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게 필수적이다. 마지막 원칙은 권리를 회복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인권침해를 예방할 순 없다는 것이다. 학생은 인권침해를 겪었다 해도 침해를 호소할 기회도, 그 호소를 경청받는 경험도 갖기 힘들다. 2006년 유엔총회에 제출된 <아동폭력에 대한 유엔 연구 A/61/299> 보고서는 ‘아동과 그 대리인이 접근하기 쉬운 절차가 마련되는 것은 물론 모든 아동이 그 절차를 알고 있어야’ 아동폭력에 맞설 수 있다고 말한다.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에 맞서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처벌이나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학생을 침묵과 체념 속에 가둬두게 하는 것은 또 한 번 인권을 침해하는 일임을 기억해야 한다.